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3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7. 25.

발 의 자 : 황운하·강민정·김두관
김병기·김용민·민형배
이수진·장경태·정필모
최강욱·한준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, 경찰의 1차수사권·수사종결권 부여,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「형사소송법」 및 「검찰청법」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이와 같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

것임(안 제129조제2항·제3항 및 제5항).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9조제2항·제3항 및 제5항 중 “검찰총장”을 각각 “관할 수사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협외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을 고발하거나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